

할렐루야 찬양대 회칙 개정안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회는 충현교회 찬양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2.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 대원의 신앙 및 음악성, 자질 향상과 대원 상호간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

찬양 대원의 자격은 본 교회 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된 자에게 있다.

대원 자격은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받은 연도에 한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된 자가 된다.

제6조(입대 및 자격상실)

① 입대 : 신입대원의 입대는 나이를 기준하여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지휘자의 오디션과 재적 임·역원 2/3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입대할 수 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교회의 명을 받아 타 부서에서 봉사한 대원으로 65세 이후 찬양대를 지원한 자는 타 부서 봉사를 임명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대할 수 있으며, 남성 대원으로 제한한다.)

② 찬양대의 정원은 찬양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단, 만 70세가 되어 찬양대원의 자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자는 대장, 지휘자의 오디션(2년1회)을 통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대원 자격을 상실한다.

1. 8주 이상 무단 결석자

2. 타 교회 이적자
3. 일신상의 이유로 대원을 사퇴한 자
4. 임역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의한 자
5. 각종 연습 및 모임에 출석 미달자.

(당해년도 임·역원 회의를 통하여 기준을 정해서 공지한다.)

제7조(권리)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결의권이 있다.

제8조(의무)

본 회 회원은 교회에서 요구한 모든 예배 및 집회에 참석하여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임·역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하여 납부한다.

제10조(연습)

본 회 회원은 신령한 예배와 공교한 찬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연습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1. 주일 예배 전 경건회 및 찬양연습과 예배 후 오후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주중(토요) 찬양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필요시 특별찬양연습을 소집할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11조(임·역원)

본 회의 대장, 부대장, 총무(이하 대장단)는 당회의 임명절차에 따르고 여타의 임·역원은 교회 원칙에 준하여 선정한다.

제12조(임·역원의 임무)

가. 총무는 찬양대 전반 및 회의를 주관하며 주일 오후 연습을 진행한다.

나.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토요 연습을 진행한다.

다. 서기는 대원 수첩 제작, 각종 회의 자료, 주간 행사 및 대원 현황을 관리한다.

라. 회계는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한다.

마. 봉사부는 주일 찬양을 위한 필요한 음료 및 토요 연습 시 간식을 담당한다.

바. 친교부는 찬양대 자체 영성 훈련(신앙부와 협력), 생일 축하 순서를 진행한다.

사. 관리부는 각종 악보와 가운 및 비품을 관리한다.

아. 신입부는 신입대원의 등단을 위한 제반 절차를 안내한다.

자. 신앙부는 주일 아침 경건회를 주관하며 대원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한다. 찬양대 자체 영성 훈련(친교부와 협력)

차. 공보부는 할렐루야 소식지 발행 및 찬양대의 공지사항을 대내외에 알리는 일을 담당한다.

파트부는 각 파트별로 대원의 동정을 살피고 전화 심방하며 단합 도모 및 출석률 향상에 주력한다.

제13조(임기)

본 회의 임·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정기 임·역원회와 임시회로 한다.

제15조(총회 및 회기)

총회는 본교회의 행사 일정에 따르며, 본 회의 회기는 교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회의구성)

모든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개정

나. 예산 및 결산 승인

다. 기타 협의 사항

제18조(회칙 개정 및 의결)

상기 “가”항의 ‘회칙 개정’은 재적 회원 1/3이상의 발의가 있거나 대장단의 발의가 있을 때 토의 심사하여,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타 의결을 요하는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경조금)

본 회의 회원에 대한 경조금 지출은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가. 장례시 : 본인 및 직계존·비속(처가, 시가 포함)에 한하며, 총무가 빈소에 접수한다. (10만원)

나. 결혼시 :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 시 총무가 예식 장소에 접수한다. (10만원)

다. 병문안 :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총무가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1주일 이상 입원시 5만원)

라. 출산시 :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여 여부총무 또는 파트장이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5만원)

마. 개업시 : 본인 경우에 한하며, 개업 예배 시 총무가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5만원)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와 찬양위원회, 찬양대의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의 세부 사항은 임·역원회의에 결의하여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9년 4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회칙은 2023년 1월 22일 개정 동의를 받은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